

5. 建設業體診斷規則中改正令

建設部令 第529號 1993. 6. 21

건설업체진단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건설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7조제3항”을 “건설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7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진단”이라 함은 건설업자에 대한 경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재무구조 및 기술개발투자실적등 재무관리상태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진단위탁) 영 제47조제2항에서 “경영진단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인회계사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
2. 공인회계사법 제12조의18의 규정에 의한 합동회계사무소
3.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

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반

4.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

가. 당해 법인의 설립목적이나 사업의 범위에 기업경영연구 또는 경영진단이 포함되어 있을 것

나. 건설산업분야의 기업경영연구 또는 경영진단업무를 3년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다. 공인회계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인회계사 2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의 서식은 건설업법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진단결과서 제출) ①진단자는 건설업법에 의한 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당해 건설업자에 대한 요약수정대차대조표 및 요약수정손익계산서를 건

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약수정대차 대조표 및 요약수정손익계산서는 건설업법시행규칙 별지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③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진단 결과서에는 진단을 실시한 공인회계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세부사항)진단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의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

건설부장관은 건설업자의 도급한도액의 결정과 건설업자의 실질자본금이 면허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조사할 수 있는바, 그 전문기관의 선정기준을 현재는 건설부업무지침에서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건설부령인 이 규칙에 직접 정함으로써 경영진단 전문기관의 선정에 대한 민원 기타 다툼의 소지를 없애는등 건설업체진단에 관한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 가. 건설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범위를 회계법인, 합동회계사무소와 경영진단업무를 3년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는 법인등으로 함(제3조).
- 나. 진단을 위탁받은 자가 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요약수정대차대조표 및 요약수정손익계산서등의 진단결과 보고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제7조의2).

<건설부 제공>